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정관

제정 2020.08.05. 규정 제01호

개정 2025.05.13. 규정 제0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다산동) 다산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3.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6.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 산 및 회 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25.05.13.>

제12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상근할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과 수당을, 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비상임)
2. 대표이사 1인 (상임)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남양주시복지재단 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④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⑤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제15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사로서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이사장 등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재단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실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남양주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광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재단홈페이지에 게재한다.<신설 2025.05.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별표 1]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재산목록

구 분	금 액	출연자	비 고
현 금	금30억원 (3,000,000,000원)	남양주시장	동산

남양주시복지재단 발기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남양주시청	시장	조광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우상현	사회복지사 (2급)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옥진	사회복지사 (2급)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	이덕우	
前 경기도청	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	사회복지사 (2급)
(주)코리아쇼와룩	대표이사	이병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전미애	
남양주시청	복지국장	이군희	
예일세무법인	대표	오용규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조성환	

[별표 3]

법 인 인 장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직인 (규격 : 2.7센티미터 정사각형)

법인 인감 (규격 : 1.8센티미터 원형)